

# 「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4. 3.21(금) 평창군수(경제체육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4. 4. 15(화)

다. 상정일자 : 2014. 4. 15(화)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경제체육과장)

-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 구성 운영에 따른 위원들의 제척·기피·회피 절차를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, 법률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함.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홍금숙)

-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는 군민체육을 진흥하여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,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주민생활을 영위코자 제정된 조례임.
- 금번 개정은 체육진흥협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안건이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·기피·회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척·기피·회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

하여 심의를 해친 경우 해촉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 
기타 법률용어 정비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.

-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**

**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**【붙임】**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

##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「국민체육 진흥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그 회무”를 “협의회사무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발의에 의하여”를 “요구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발생한 때”를 “발생한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부적합하다”를 “적합하지 않다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대하여는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

가”를 “대하여는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3. 그 밖의 수입금

제13조제2항 중 “이율이 높은 예금으로”를 “이자율이 높은 예금에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2. 해당 연도의 기금 사용계획

제14조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기금운용계획서와 이 조”를 “기금운용계획서와”로 한다.

제18조 중 “ 「평창군재무회계규칙」 ”을 “ 「평창군 재무회계 규칙」 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